

<p>2.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서울여학생생활교육원에서 실시된 연수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해 실시된 것으로 본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과학교육원설치조례안</p> <p>제 1 조(목적) 이 조례는 과학·기술·정보시대를 이끌어 갈 능력 있는 사람을 기르고자 서울특별시 관내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과학·기술교육에 대한 연구, 정보·자료의 개발·보급, 학생과 교원의 교육 및 연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하여 서울특별시과학교육원(이하 “과학교육원”이라 한다)을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 2 조(위치) 과학교육원은 서울특별시 종구 회현동1가 100번지의 177호에 둔다.</p> <p>제 3 조(원장) ① 과학교육원에 원장을 두되, 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. ②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원무를 통할 하며,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</p> <p>제 4 조(경비부담) 과학교육원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재비, 식비 등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.</p> <p>제 5 조(시행규칙) 과학교육원의 직제와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②(경과조치) 1. 이 조례 시행일에 서울과학 교육원장은 서울특별시과학교육원장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, 기타의 서울과학교육원 소속 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한 서울특별시 과학교육원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. 2.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서울과학교육원에서 실시된 연수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해 실시된 것으로 본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설치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	<p>제1조증 “이 조례는” 다음에 “서울특별시 관내의 공·사립의 고등학교이하”를 삽입한다.</p> <p>제3조제1항증 “지방기계기좌로”를 “지방기계사무관 또는 지방전기사무관으로”로 한다.</p> <p>제4조를 삭제한다.</p> <p>제5조의 제목과 본문중 “운영예산”을 “비용부담”으로, “수리정비소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”을 “수리정비소의 기자재 수리·교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”으로 한다.</p> <p>제6조증 “공무원의 정원 및”을 “수리정비소의 직제와”로, “시행예”를 “시행에 관하여”로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18. 맑은물供給에關한建議案(水資源管理委員會委員長 提案)</p> <p>(15時 45分)</p> <p>○議長 文一權 다음은 議事日程 第18項 맑은물供給에關한建議案을 上程합니다.</p> <p>(議事棒 3打)</p> <p>水資源管理委員會 黃好淳議員 나오셔서 提案說明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○黃好淳議員 尊敬하는 文一權 議長님, 그리고 先輩·同僚議員 여러분, 저는 衿川區 第2選舉區 出身 水資源管理委員會 所屬 黃好淳議員입니다.</p> <p>지난 7月 12日 第4代 서울特別市議會를 開院한 후 우리 水資源管理委員會는 두 차례의 懇談會와 現場視察, 그리고 3次 水資源管理委員會 常任委員會를 열어 所管業務를 把握하면서 맑은물 供給에 關한 對政府 建議案을 本議員이 提案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.</p> <p>主文을 말씀드리면, 서울特別市議會는 千百萬 서울特別市民과 그리고 923萬 首都圈 國民에게 漢江水質 汚染防止와 누구나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原水를 供給하기 위하여 八堂湖 上水源特別對策地域 擴大指定과 環境污染의 監視徹底, 그리고 基礎環境施設 增設과 正常運營을 期待하면서, 八堂댐 下流에서부터 서울特別市 市界區間의 上水源保護區域 指定公布 實施와 물 행정에 關한 主要改善方案을</p>
--	--